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관 운영 매뉴얼



목 차

I. 일반공통사항(생활관생 모집)

1. 입사 신청 절차	1
2. 신청 대상자 및 신청 기간	1
3. 입사 기간	1
4. 모집 일반(인실 및 관비)	2
5. 공과금 기준	2
6. 입사 제한 대상자	3

II. 입사 자격 및 선발

1. 입사 자격	4
2. 선발 기준	4

III. 입사 신청

1. 신청 방법	4
2. 필수 제출 서류	5~6
3. 제출 서류 예시	6~7

IV. 입사 포기

1. 환불 안내	8
----------	---

V. 생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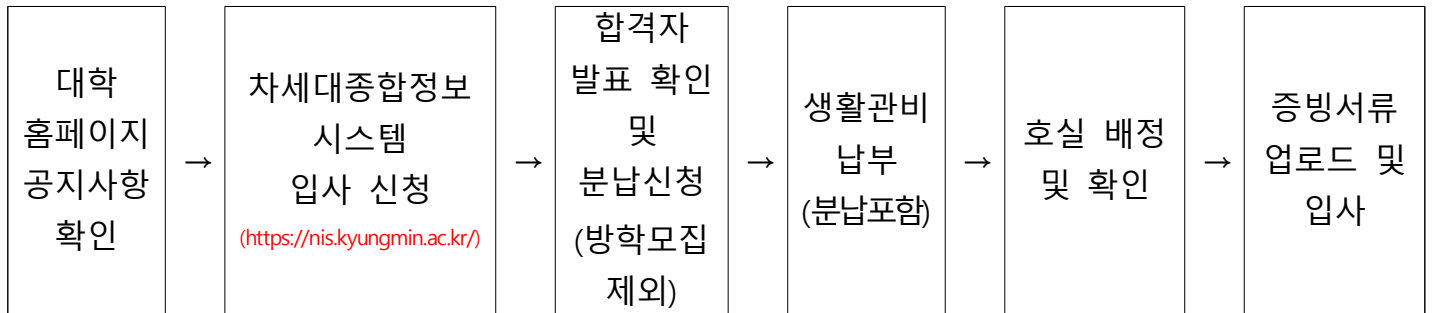
1. 화재대피훈련 이수 안내(필수)	9
2. 호실 점검 실시(필수)	9~10
3. 입사 시 반입 가능 물품	10
4. 반입 금지 물품	10
5. 빈번한 질문	11

VI. 생활수칙 안내

1. 중대 금지사항	12
2. 기타 안내 및 수칙 미준수 사례	12
3. 생활수칙 위반 상·벌점 기준표	13~14

I. 일반공통사항(생활관생 모집)

1. 입사 신청 절차



2. 신청 대상자 및 신청 기간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재학생 · 신입생 편입, 복학 예정자	1학기 : 매년 1월말 ~ 2월초 2학기 : 매년 7월말 ~ 8월초

* 제출서류 중 보건소 등에서 발행하는 '결핵 검진 진단서'의 경우, 발급에 약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오니 신청 기간 전에 검사를 받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 기간

구 분	기 간
정규학기	1, 2학기 : 학기개강일 ~ 학기종료일
방학기간	동·하계 학기종료일 ~ 학기개강일

*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퇴사 일은 조정될 수 있음

4. 모집 일반(인실 및 관비)

생활관명 (성별)	층	인실 구분	모집인원	생활관비(원)	기타	
					호실 비품 및 시설	비고
가나안관 (여자)	1층	1인실(장애인) 1개실	1명	일반 : 1,400,000원	책상, 침대, 옷장, 신발장, 화장실, 에어컨	엘리베이터 운영
	2층~6층	각 층 2인실 11개실	110명	일반 : 1,180,000원 코너 : 1,250,000원		
웅지원 (남자)	1층	2인실 3개실 1인실 3개실	27명	1인실 : 1,200,000원 2인실 : 1,050,000원	책상, 침대, 옷장, 신발장, 화장실, 에어컨	-
	2층					
	3층					
	4층	2인실 2개실 1인실 2개실	6명			
에스더관 (남자)	1층	2인실 2개실 1인실 2개실	24명	1인실 : 1,200,000원 2인실 : 1,050,000원	책상, 침대, 옷장, 신발장, 화장실, 에어컨	-
	2층					
	4층					
모세관 (남자)	4층	2인실 1개실 1인실 2개실	4명			신청 인원 에 따라 변동 가능
정심원 (남자)		2인실 2개실 1인실 4개실	8명			
드보라홀 (남자)	2층	2인실 3개실	6명	2인실 : 1,050,000원		-

* 단, 시설 및 집기 파손 시 변상, 미 조치 되사 시 다음 학기 입사 제한 조치
 가.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 / 유효기간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제출할 시 거주 불가
 나. 생활관 입사 전형은 1지망으로만 처리되므로 중복 신청 및 호실 변경이 불가, 신중히 선택
 (예 : 가나안관 2인실, 코너 2인실 / 웅지원 2인실, 1인실) 중 택일
 다. 신청 기간 마감 전 입사 신청 화면에서 신청 인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인실 변경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5. 공과금 기준

구분	도시가스 평균금액	전기요금 평균금액	개인별 초고가공과금 산출식	비고
하절기 (5월~10월)	200,000	100,000	초과금액 ÷ 호실인원	학생생활관 공과금 기본제공 금액은 남자생활관만 해당함
동절기 (11월~4월)	300,000			

* 매월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 평균금액 초과에 대하여 해당 호실별 추가요금 부과 징수

6. 입사 제한 대상자

구 분	내 용
생활관 운영 내규 제6조 (입사 제한 대상자)	1. 학칙을 위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휴학 중인 자 3.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4. 생활관 생활시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로서 생활관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사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매학기 초 입사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 생활관 생활·안전교육에 불참한 자 다만, 부득이하게 참석 못할 시 사전에 불참 통보한 자에 한해서 서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자
공동생활 부적격자	1. 생활관 건물별 또는 호실 내 잦은 민원 및 트러블이 심한 자 2. 심한 잠꼬대 / 코골이가 심한 자 3. 뇌전증 및 조울증 4. 야간 생활 불규칙 자(통금시간 이후 잤은 출입 등) 5. 수면 장애자(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기타	1. 생활관 누적 벌점 (직전 2개 학기) 15점 이상인 자 / 생활관 강제 퇴사자 2. 입사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3. 학기 지정된 퇴사 일자에 퇴사하지 않은 자 4. 퇴사 시 호실 내 물품(쓰레기) 방치 및 개인 짐을 방치한 자 포함 5. 학기 정규 퇴사 시 호실에 물품(쓰레기) 방치 또는 행정 담당자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개인 짐을 방치한 자 6. 지정된 퇴사 마감일 이후 잔류자

* **입사 제한 대상자는 생활관 입사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중도 퇴사의 사유가 됨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입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입사 자격 및 선발

1. 입사 자격

구 분	내 용
입사자격	1. 본 대학 신입생(사회적 배려대상자 포함)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을 납부한 자 2. 재학생(휴학생 제외 / 재입학 · 편입생 포함)으로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 3. 방학기간 중 생활관 입주생의 불편함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와 산학 · 관 협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학적	1. 신입생 또는 재학생 (복학 예정자 포함, 휴학 예정자 제외) ※ 생활관비 납부 또는 입사 후에도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입사 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거주지	1.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상관없음. ※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결격사유	1. 생활관 운영 규제 제6조(입사제한)에 해당 되는자 및 공동생활 부적격자 2. 생활관 누적 벌점 15점 이상 및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선발 기준

모집 대상	선발 기준
신입생 및 재학생 (편입생 포함)	· 신입생 : 원거리 학생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 거리 점수(100%) · 재학생 : 원거리 학생 우선 선발. 단,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성적 점수 우위 자를 선발함

Ⅲ. 입사 신청

1.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절차
신입생	경민대학교 학교홈페이지 게시글 → https://nis.kyungmin.ac.kr/nxweb/DormMoveInApp.do 학생생활관 → 입학구분,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입력 → 입사신청
재학생	경민대학교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 학번, 비밀번호 입력 → (https://nis.kyungmin.ac.kr/)학생생활관 → 입사신청

2. 필수 제출 서류

가. 입주 전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업로드 후 입주 시 원본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거주 불가합니다.

가. 본인 사진(얼굴 정면)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 **개인사진이 없는 경우 업로드**

나. 주민등록등본 :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 / 신고일 기재본

다. 결핵 검진 진단서(흉부 X-ray) 또는 건강진단서 : 입사신청 전, 검진 일자 또는 판정(판독) 일자 기재본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 필수 기재, 뒷자리는 *로 발급받거나 삭제 후 제출

라. 추가 서류 제출 해당자 : 아래 표 확인

구 분	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필수서류 (공통)	지원자 전체		사진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개인신상조회 → 개인사진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결핵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거주 불가
해당자만 추가 제출	우선 선발	신체장애 학생(중증 이상)	신체장애증명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학생	수급자 증명서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사실 증명서	-

※ 거주지 증빙용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 중 1명만 주소가 같은 경우	1. 부/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1.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중 1부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 각각 다른 주소인 경우	1. 부/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한 부모 가족	1. 한 부모가족 증명서 1부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1.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중 1부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모두 사망 시	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중 1명 사망 시	1.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1부 2.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학생, 부, 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이면 발급자 명의 무관
- 부모 중 1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 제출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3. 제출 서류 예시 : 서류 미비 시 입사 전형 제외, 위·변조 적발 시 입사 제한 조치

가. 본인 사진

- * 정면 얼굴(증명사진 및 핸드폰 사진 가능)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직접 촬영 및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입사 전형에서 제외
-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 개인신상조회에 개인사진 업로드(필수)

나. 주민등록등본

- * 발급 일자 및 발급부서 직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스캔 혹은 사진 촬영 후 업로드(PDF파일로 변환 업로드 가능)
- * 성명/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

다. 결핵 검진 진단서 또는 건강진단서
<예시>

문서확인번호 : []

주민등록표 (등본)

경기도 성남시장

세대주 성명(한자) : [] 세대주 성 사후 및 필자

주소 : []

세대주 성 명(한자) : [] 세대주 성 사후 및 필자

연호 관계 주민등록번호 : []

번호	세대주 성 명(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생월 / 신 고 일	등록상태	변동사유
1	본인	[]	[]	[]	[]
2	배우자	[]	[]	[]	[]
3	자녀	[]	[]	[]	[]

경기도 []

* 1. 본인이나 세대원중 경민(www.gm.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경기도www.gm.go.kr에서 원 인공인원호로 내용의 정확하고 발급요금이 부담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3. 국민의 법인은 「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6조 제 2항에 따라 인공인원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록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의 재산에 의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귀화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귀화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5. 필자의 가족인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주에게 인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원본확인문서번호 : []

건강진단서 용도 : 재출증

성 명 : 이 []

주민등록번호 : 010 []

주 소 : 강원도 []

검진일자 : [] 6일

판정일자 : [] 7일

위 사람은 검사상 폐결핵(경상), 8형간염(경상)임을 증명함.

검사명 : []

B형간염(진단서) : []

8형간염(진단서) : []

흉부 Chest PA(진단서) : []

상기와 같이 진단함.

2023년 []

진단 의사 면허번호 : []

의사명 : []

500원

2023.02.21

2023.02.21

2023.02.21

경민 고성군 건강증 수성로 30, 가동 (간성증, 보건소) ☎ []

결핵 및 건강진단서

IV. 입사 포기

1. 환불 안내

생활관비 납부자 중 입사 포기, 중도 퇴사, 강제 퇴사 시 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규정 제9조(관비의 중도환불 및 중도 관비 납부)에 의거 환불하며, 파손 및 분실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함

환불기준일

1. 개관일(입사 개시일) : 실제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개관일(입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2. 입사 포기(신청일 기준) : 신청일
3. 중도 퇴사 및 강제 퇴사(퇴사 일 기준) : 퇴사하는 날 기준

※ 유의사항

- ① 입사 개시일부터 중도 퇴사를 하면 다음 학기 입사 신청이 제한됨
단, 입대 휴학(입영통지서), 병가 휴학(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때에만 예외 인정
- ②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 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 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 ③ 입사 포기 · 중도 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구 분	환불 기준일	환불기준	환불기준	비 고
입사 포기	개관일 기준	개관일 이전	납부 금액의 100% 환불	-
정규 퇴사	퇴사일 기준	-	환불금액 없음	-
중도 퇴사 (학기 중 방학 중 포함)	퇴사일 기준	입사 기간별 퇴사 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잔여 생활관비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 일을 포함하여 지난 기간의 호실 사용료 * 잔여일 수 30일 미만 시 환불금액 없음	다음 학기 입사 불가
강제 퇴사	※ 생활관 규정 및 관생수칙 위반에 의한 부당 입사자 및 강제 퇴사자는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재학 기간 중 입사 제한

V. 생활 안내

1. 화재대피훈련 이수 안내(필수)

학생 생활관 운영 규정 제5조의 4(생활관 생활·안전교육) 학생 생활관 입사자는 매년 매학기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 기간 중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미이수자 조치사항 : 벌점 3점

2. 호실 점검 실시(필수)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4장 생활관 생활

1.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 생활관 사감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 호실 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 점검, 일괄적인 시설 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3. 사감은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추가 벌점을 건의할 수 있다.
4. 생활지도를 위한 사감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목 적	생활관 내 질서유지 입사자 신분 확인을 통하여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 출입 방지 등 안전 관리
호실 점검 시기	정기 호실 점검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 매월 점검 결과에 따라 정기 점검 일정 변경 가능 특별 호실 점검 1. 주변 호실 또는 호실 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순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퇴사 or 호실 이동 시 4. 입사 개시일 1일 전 전체 호실 점검
호실 점검 절차	호실 점검 시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호실 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호실 점검을 진행함 1.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기 호실점검 실시 안내문 공지 * 점검 기간,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 공지 2. 공지된 점검 기간 중 불시에 점검 실시 3. 생활관 담당자 또는 사감이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호실 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 상태 점검 * 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4.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 부과

호실 점검 내용	입사자 신분 확인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1. 생활관 내 흡연과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음주, 청소 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수거 및 상 별점 기준표에 의거 조치 2. 음식물 :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폐기 처리) 3. 주류(빈 병 포함) : 반입 불가 및 폐기 처리 4. 전열기 등 전기제품 : 퇴사 시 반환 (호실에 보관하지 않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때 반환)
----------	--


3. 입사 시 반입 가능 물품

구분	내용	
필수	1인용 방수 매트리스 커버 - 싱글사이즈(생활관 입주시 필참)	
랜선	각 호실에는 랜 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전기제품	아래의 품목만 반입 가능하며,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미니 제습기(usb형)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 금지	
간식류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단, 취식으로 인한 민원 시 별점 부과)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음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 팩) 가능
	과일	일정 용량을 보관 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빵	샌드위치류를 제외한 경우 소량 보관 가능
기타 음식	소량으로 개별단위로 포장된 경우 가능	
유역사항	반입 불가 물품 적발 시 별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주류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물품은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4. 반입 금지 물품

구분	반입 금지 물품
도검류	식칼, 과도, 접이식 칼, 면도칼 등
공구류	도끼, 망치, 톱 등
총기. 화약류	가스총, 폭죽 등
가스류	가스통(가스류 일체)
화학물	화학 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의약품류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등의 약품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냉/난방 기구. 전열기구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 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 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 커피 분쇄기, 믹서기, 다리미, TV, 도박성 오락기기, 공기청정기 등
인/발화성 물질.취사도구.전동모터류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 포트, 등
주류(빈 병 포함). 음식물	주류(빈 병 포함) 및 호실 내 음식물 장기 보관 불가 (일부 간식류만 허가)

5. 빈번한 질문

구 분	내 용	
입사자 짐 배송	<p>입사자의 짐은 생활관 입사일에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생활관으로 배송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가 없으므로, 본인의 입사일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짐을 배송하여야 함. 본인 수령이 원칙</p> <p>배송된 짐은 각 생활관 앞 로비에 배송된 채로 비치되며, 분실 시 행정실에서는 책임지지 않음(1인당 2~3박스 이내로 배송 요망)</p> <p>주소 : (11618)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가나안관 000호 [예] (11618)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가나안관 303호, 000</p> <p>생활관별 주소 및 위치</p>	
	남학생 생활관	여학생 생활관
		
생활관 별 주소	<p>에스더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067번길31 웅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67번길54 드보라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01번길41 모세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067번길35 정심원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067번길40</p>	가나안관: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가나안관
입사생 외 생활관 출입 불가	<p>생활관은 원칙적으로 입사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 입퇴사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입주 학생이 있어 외부인 출입 불가 외부인(학생생활관 미입주자, 이성 등) 동반 시 강제 퇴사, 재학 중 입사 불가</p>	
생활관 출입 시간	<p>OPEN : 아침 5시(05:00) CLOSE : 24시 통행금지 시간 (24:00~05:00) 운용</p>	
현관 출입 방법	출입 번호 또는 지문	
호실 출입 방법	호실별 개별 번호	
호실 청소	입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세탁실 이용	<p>공용 세탁기 및 건조기 세탁기 사용에 필요한 용품(세제 및 섬유 유연제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p>	
전열기사용 금지	과열 및 화재 위험 때문에 전열기의 사용 절대 금지	
음주 금지	생활관 전체 공간 내에서의 음주 및 주류 보관 금지 (빈 병 포함)	
흡연 금지	생활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흡연 불가	

VI. 생활수칙 안내

1. 중대 금지사항

<p>*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 퇴사 되는 사항들입니다. *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p>	
강제 퇴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생활관 출입 또는 호실 양도·명의 도용 2. 생활관 내 절도 행위 3. 생활관 내 사생 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4. 생활관 사생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 및 보복하는 행위 5. 생활관 행정실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생활습관 등 사생 간 불화 문제로 주의 경고 및 호실 이동 등 조치 후에도 같은 문제로 사생 간 불편함을 초래한 자) 6. 방화행위 7. 누적 별점이 30점 이상인 사생
빈번한 벌점 부과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1시 이후 다른 호실 사생을 출입시킨 자와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이를 방조한 자 2.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3. 생활관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생활관 내 주류 보관(빈 병 포함) 4. 호실 청소상태 불량(거실 및 호실 내 신발 착용 등) 5. 취사 기구, 인화물질 등 생활관 내 반입금지 위험 물품 반입 6. 공동현관 통과(출입문 번호 유출) 및 비정상적인 무단출입(창문 또는 테라스 등)

2. 기타 안내 및 수칙 미준수 사례

가. 기타 안내

1. 개인 물품, 택배 등 분실의 경우 학생 본인 책임이며, 부서의 책임이 없고 처리불가함.
단, 도난으로 판단될 시 '학생생활관 민원 접수 신청서 작성'
2. 분실 및 기타 민원 접수 시 사감실에 비치된 '학생생활관 민원 접수 신청서' 작성
단, 접수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나. 미준수 사례

1. 호실 내 음주 및 흡연, 외부입 출입 등 벌점 부과 및 다음 학기 입주 제한

3. 생활수칙 위반 상·벌점 기준표

가. 상·벌점에 따른 통보 및 조치사항

- * 상·벌점 기준은 매 학기 단위로 부과 또는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벌점 15점 초과자는 다음 학기 입사가 불가능하며, 누적벌점 30점 이상 시 가정통보 후 퇴사 조치한다.
- * 생활관 규정 및 관생수칙 위반에 의한 부당 입사자 및 강제 퇴사자는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나. 상·벌점의 상계

- * 벌점 부과 시 상점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계처리가 불가하다.

1. 생활관내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2. 실내 및 생활관 주변 흡연 행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행위(신나, 부탄가스, 버너 등 반입 행위)
4. 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벌점 기준은 매 학기 단위로 부과

※ 벌점항목

구 분	항 목	벌 점
공동생활 부적합한 행위	1. 생활관내 음주행위(호실에서 음주 또는 음주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포함)	5점
	2. 생활관내 도박행위(호실에서 도박 또는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포함)	5점
	3. 불빛, 소란, 물리적 소음 등으로 사생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	3점
	4. 실내 및 생활관 주변 흡연 행위	5점
	5.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개, 고양이, 햄스터 등)	5점
	6. 생활관내 소란 행위	3점
	7. 허위 신고 및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5점
	8. 타인의 우편물 불법 수취 및 개봉한 자	5점
	9.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출입한 자	5점
안전 수칙	10.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행위(신나, 부탄가스, 버너 등 반입 행위)	3점
	11. 전열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전기장판, 난로 등 반입 행위)	3점
	12. 반입금지 물품 반입 적발 시	3점
시설 보호 수칙	13. 네트워크(인터넷)환경을 유해하는 행위(바이러스 유포 등)	5점
	14. 생활관내 시설물 파손 및 절취 행위(변상)	3점
	15. 호실내의 가구를 허가 없이 임의로 이동 및 재배치하는 행위	3점
	16. 실내낙서, 못질, 스티커 부착 행위	3점
	17. 생활관내 커튼을 설치하는 행위	3점
	18. 외출 시 호실 내 실내등 미소등 등 전기 및 보일러 과다 사용 행위	3점
행정지시 및 절차수칙	19. 퇴사·퇴실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퇴실하는 행위	15점
	20. 호실 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호실 비밀번호 유출 포함)	5점
	21. 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점

	22. 무단으로 호실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행위	5점
	23. 생활관 통금시간(24:00 ~ 05:00)을 위반하는 행위	3점
	24. 생활관 입·퇴사 일정 조사 기간 내 미회신하는 행위	3점
	25. 안내된 기간 내 호실 점검을 미실시하는 행위	3점
	26. 매학기 진행되는 생활·안전교육에 불참하는 행위	3점
	27. 관생과 방원의 벌점 항목의 위반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	3점
청결	28.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5점
	29. 호실 및 각 방의 청소, 정리정돈 불량	3점
	30. 생활관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	3점

※ 상점항목

구 분	항 목	상점
행정지시 및 절차수칙	1. 생활관을 위해 환경 미화, 관내 질서 유지,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5점
청 결	2. 호실 및 각 방의 청소, 정리정돈 우수	5점

※ 생활관 담당자, 사감은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의 추가 부과를 건의할 수 있음

※ 조치사항

1. 누적 벌점 3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 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2. 누적 벌점 15점 이상 : 다음 학기 입사 불허